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73
------	-----

2015. 6.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 6.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류경기)

가. 제안이유

-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465명에서 17,471명으로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함.

개정 전	17,465	10,154	2	9,770	29	329	24	7,311	6,820	491
개정 후	17,471	10,160	2	9,776	29	329	24	7,311	6,820	491
증·감	+6	+6	-	+6	-	-	-	-	-	-
내역				1급+1 4급+5						

나. 부서신설과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안 제2조 및 별표3)

- 안 제2조 및 별표3은 실행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서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기구 및 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증원된 안전분야 인력과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 등에 필요한 인력수요임.

〈표 2〉 상세 정원 증원 내역

구 분	계	본 청(3)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2)	
		신 설(9)	폐 지(5)	신 설(3)	폐 지(1)
1급	+1	안전총괄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안전본부	-	-
2·3급	-	물순환안전국	도시교통본부 (※ 2·3급 ⇨ 1급)	-	-

3급	-	-	-	서울물연구원	상수도연구원
4급	+5	서울역일대종합발전 기획단 상황대응과, 도시빛정책과, 도시농업과, 시설안전과, 물순환정책과	건설안전과, 물관리정책과, 민원해소담당관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

- 직급별로는 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1급 1명, 신설되는 상황대응과와 도시농업과, 도시빛정책과, 시립과학관 등에 4급 5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 물순환안전국과 시립과학관 등의 신설에도 큰 폭의 인력증원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신설되는 조직이 사실상 기존의 조직을 기능적으로 분화한 조치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할 수 있음.

다.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 규모

- 2014년 3월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의 총액인건비제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음.
- 과거의 총액인건비 제도와 비교해 기준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행정

자치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특징이 있음.

-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제시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액은 총 1조 4,503억원(기준인력 19,188명)이며,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일반직 6명)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는 5억 9,140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이후에도 시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서울시 기준인건비 세부 산정내역¹⁾

구 분	기준인력	인건비(천원)
총 계	19,188명	1,450,322,251
일 반 직	10,937명	830,462,544
소 방 직	6,864명	495,777,464
무기계약직	1,387명	54,887,782
기 타 직	-	69,194,461

〈표 4〉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591,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6명) : +591,403 ▷ 1급(+1) : 130,533 × 1명 = +130,533 ▷ 4급(+5) : 92,174 × 5명 = +460,870 	'15년 기준인건비 산정단가 기준

1) 2015년 서울시의 인건비 편성규모는 1조 4,007억원임.

라. 서울시 공무원 정원의 변동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기구 및 정원을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개별승인제(1964년)를 시작으로 기준정원제(1988년), 표준정원제(1997년),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2004년)와 기준인건비제(2014년)로 변화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자율권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시는 관련 제약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소폭이긴 하지만 늘려오고 있음.

〈표 4〉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市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정원 ²⁾	일반직 정원	4급이상 (4,5급 복수직위 포함)
2015	25,518,445	17,471	9,776	286
2014	24,413,332	17,120	9,587	246
2013	23,506,900	16,935	9,575	261
2012	21,782,900	16,645	6,779	259
2011	20,585,000	16,283	6,558	253
2010	21,257,300	16,056	6,540	246

2) 2015년 총 정원은 금번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수치임. 2014년 총 정원이 급증한 것은 기능직 폐지에 따라 과거 기능직 정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임.

- 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이 2010년 21조 2,573억원에서 2015년 25조 5,184억으로 증가하는 동안 공무원의 총 정원은 16,056명에서 17,471명으로 증가해왔음.
-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를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2010년에서 2015년사이 5년동안 1,415명 증가해 8.81%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4급 이상 간부들은 246명에서 286명으로 40명 증가해 총 정원의 약 2배인 16.26%의 증가폭을 보임.
- 다양한 행정 분야의 전문성 확대요구와 책임성 강화라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총 정원 증가폭의 2배에 해당하는 간부직급 증가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465”를 “17,471”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714”을 “9,720”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465”를 “17,471”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770”을 “9,776”으로 한다.

같은 표 1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7	6	1			
----	---	---	---	--	--	--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24	135	15	7	63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435”를 “9,436”으로 한다.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의 계란 중 “55”를 “5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465”를 “17,471”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714”을 “9,720”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465”를 “17,471”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770”을 “9,776”으로 한다.

같은 표 1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7	6	1			
----	---	---	---	--	--	--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24	135	15	7	63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435”를 “9,436”으로 한다.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의 계란 중 “55”를 “5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46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9,714명</p> <p>2.~5. (생략)</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17,471명 ----- -----.</p> <p>1. ----- ----- : 9,720명</p> <p>2.~5.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 의 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7,465</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9,770</td> <td colspan="5"></td> </tr> <tr> <td>1급</td> <td>6</td> <td>5</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2</td> <td>17</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8</td> <td>8</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19</td> <td>131</td> <td>15</td> <td>7</td> <td>62</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9,435</td> <td colspan="5"></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55</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7,465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770						1급	6	5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19	131	15	7	62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35						전문경력관 소계	5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 의 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7,471</td> <td colspan="5"></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 colspan="5"></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시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9,776</td> <td colspan="5"></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2</td> <td>17</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8</td> <td>8</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24</td> <td>135</td> <td>15</td> <td>7</td> <td>63</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9,436</td> <td colspan="5"></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54</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7,471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776						1급	7	6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24	135	15	7	63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36						전문경력관 소계	54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7,465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770																																																																																																																																																																																																																
1급	6	5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19	131	15	7	62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35																																																																																																																																																																																																																
전문경력관 소계	55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7,471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776																																																																																																																																																																																																																
1급	7	6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24	135	15	7	63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36																																																																																																																																																																																																																
전문경력관 소계	5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465에서 17,471명으로 총 6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일반직 +6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 서울특별시 기준인건비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인건비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소계(b)						
□ 총 비용(a-b)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 매년 인건비 상승율 3.8%('15년 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5년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91,403	613,876	637,204	661,417	686,551	3,190,451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강규일 (☎ 2133-673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일반직 +6명(1급 +1, 4급 +5)

2. 비용소요 추계 : 591,40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591,403	○ 일반직(+6명) : +591,403 ▷ 1급(+1) : 130,533 × 1명 = +130,533 ▷ 4급(+5) : 92,174 × 5명 = +460,870	'15년 기준인건비 산정단가 기준